심의결과 통보서

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수		책임연구자	김미경	소속	암역학예방연구부
수 신		의뢰자	국립암센터		
IRB 번호		NCC2019-0116			
접수번호		2019-0048-0044			
구분		신속심의			
연구 과제명	가 만	암화과정에서 Microbiome-Host factor-Environment 상호작용의 규명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: 위암, 대장암, 비뇨기암, 췌장암, 두경부암, 구강암, 자궁경부암, 자궁내막암, 폐암, 식도암, 피부암을 중심으로			
	명이 미난	Complex link between microbiota, tumor characteristics host, and environment in carcinogensis: gastric cancer, colorectal cancer, urinary cancer, pancreatic cancer, Head & neck cancer, oral cancer, cervical cancer, and endometrial cancer,lung cancer, esophageal cancer, skin cacner			
연구상세 분류		연구대상:기타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분류:인간대상 연구,인체유래물연구 연구단계:해당없음 동의취득여부:서면동의서 취득			
심의유형		계획변경			
접수일		2024년 11월 13일			
심의일		2024년 11월 20일			
지속심의 제출주기		1년	연구위험도	Level I: 최소위한 2013.12.01 이후 접수	-되어 승인된 신규과제부터 해당
연구승인 유효일		2025년 10월 16일 지속심의신청서는 연구승인유효일 2개월 전 제출			
심의결과		승인			









제출자료 및 심의내용

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

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(version 7.0)(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_협동과제_검진센터_v7.0.hwp)

심의의견

2024년 11월 26일

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



- 1. 본 위원회 및 모든 연구자는 임상시험 관리기준(KGCP),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핼싱키 선언, 국제임상시험 통일안(ICH-GCP)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2. 임상시험(또는 임상연구) 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[승인] 이전에 연구대상자의 해당 임상시험(또는 연구)에 참여는 금지됩니다.
- 3.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 또한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4. 위원회의 승인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 1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년 1회 이상 지속심의보고를 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요구한 제출주기에 따라 연구 진행과 관련한 보고서인 지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심의면제 승인된 연구는 미적용됩니다.
- 5.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IRB 승인 도장과 철인이 있어야 사용 가능 합니다. 또한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과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,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6. 연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시,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실시해야 할 시,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증가 시키거나 연구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,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- 7.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8.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9. [시정승인] 또는 [보완] 심의결정으로 수정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, 가능한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며, 답변서를 늦어도 [시정승인]은 3개월 이내에, [보완]은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10. 참여연구자 중 IRB 위원 활동 중인 연구자는 이해상충관계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
- 11. 헬싱키선언에 따라 모든 인간대상연구는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임상시험데이터베이스에









등록 되어야 합니다.

12.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위원회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 할 수 있으나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.

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
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번지 (마두 1동 809번지) 우편번호 : 10408

TEL: 031) 920-0425, 0428 / FAX 031) 920-0378





